

미디어 자살유발 콘텐츠, 언론의 현주소는?

안현덕 서울경제신문 법조전문기자

세상 떠난 이에게 남겨진 댓글...“유서에 나 적지 말아라”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고소장에는 A양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인물이 관여한 정황이 고소란히 담겨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5월께 자택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안서상 사인은 B가스 흡입에 따른 산소결핍질식사였다. A양의 아버지가 예의주시한 건 ‘○○’ 아이디를 쓰는 성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A양 아버지는 해당 인물이 A양이 자살을 시도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아이디 ○○으로 C갤러리에 남긴 글·댓글을 제시했다. 아이디 ○○은 C갤러리에 ‘갈거면 가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셈’, ‘유서에 나 적지 말아라’와 같은 글이나 댓글을 남겼다. A양이 사망한 당일에도 ‘진짜 죽은거냐’, ‘넌 살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죽기 전에 죽는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거나 ‘자살 방법 내가 알려줬는데 진짜 사라질 줄은 몰랐다’는 식의 댓글도 남겼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갤러리에 ○○ 아이디로 글을 남긴 인물은 D씨로 밝혀졌다. 그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예방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는 지난 4월 D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A양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지 1년 가까이가 지난 때였다. “D씨가 B가스로 자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A양이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댓글을 종합할 때 D씨가 A양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B가스 구매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이용, A양과 자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A양 사망에 D씨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길 만한 자료가 없고, A양이 실제 자살할 것으로 확신할 만한 정보를 D씨가 가지고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근거로는 D씨가 A양 추정 자살 시점 이후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댓글을 폈었다. D씨가 자살을 의도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으로 예상치 못해 해당 행위가 자살 방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범행 당시 D씨가 만 20세가 되지 않았고, 조울증을 앓았던 점도 고려했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결과가 나왔지만, 뒷맛이 썼다. 특히 “피의자를 체포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자살방조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A양 아버지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C갤러리에선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질 낮은 수준의 소통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며 “(갤러리의) 구조 자체가 제2의, 제3의 ‘우울증 관련 갤러리’를 만들기 좋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자살방조라는 이상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Q1. 죄책감은 느낄까?

A양 아버지 말을 곱씹다 보니,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들었다. 우선 느낀 의문점은 재판부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실제 D씨가 죄책감을 느끼지였다. 검찰 송치 이후 그가 A양 유족에 대해 직접 사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C갤러리에 ‘검사님과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D씨는 본인이 ‘그동안 자살 충동을 느껴왔고, (자살 방법) 등 위법 정보도 충동적으로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함께 밝히기는 했으나, 전문가들은 그가 이른바 ‘공개 반성문’을 온라인상에 올렸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살예방법 위반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는 머릿속 물음표 수를 더 늘게 했다.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살방조 미수·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E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12월 24일 부산에 있는 본인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E씨를 포함한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명이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도 E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글을 올렸다. 또 본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F씨의 경우 자살을 사기에 이용한 사례였다. F씨는 2019년 9월 트위터(현 X)에 ‘살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 고통이 없는 약이며 해외에서 파는 약이다. 직접 공수 후 제작했다. 연락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F씨가 제시한 가격은 50만원. 피해자인 G씨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텔레그램(Telegram)으로 연락하자, F씨는 ‘구성물은 모두 직접 공수해 제작했다. 물로 희석해 마시면 고통 없이 3분 내 잠들고, 15분이면 끝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수사 결과 F씨는 실제로 해당 약물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애초 만들 능력이거나 판매 의사도 없었다. G씨는 50만원을 보냈지만, 결국 택배는 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만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자살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F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사람의 경우 한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으나, 재차 자살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들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도 했다. 다른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사기를 쳤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성악설)’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어찌 보면 남의 생명을 가지고 한 유희인데,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을까, 진실로 인간은 악한 존재였는가?’

Q2. 자살 방조·자살예방법 위반 경계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지만, D·E·F씨의 혐의는 조금 달랐다. 이들 모두에게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E씨의 경우 자살방조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자살예방법 위반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리면 안 되고,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살 방조는 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기거나 또는 돕는 행위를 뜻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거나, 방조해 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데 대해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법적 조항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각각 2년 이하 징역(자살예방법 위반)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자살 방조) 등으로 죄의 무게는 달랐다. “연락하거나 관여하는 등 자살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죄질을 결



정한다”는 게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살 방조의 경우, 관여 정도를 따져봐야 해 더 엄격히 본다”고 덧붙였다. 즉 인터넷상에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닌 직접 통화하는 등의 연관성이 있어야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얘기다.

문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 법률 조항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지다. 우리나라는 IT 발달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나·어디서·언제든’ 인터넷을 접속할 환경이 조성돼 있다. 특히 10~20대에게는 SNS 등 인터넷 공간이 더 익숙하다. 사람 사이 소통하는 창구가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아도 가능한 세상인데, 여전히 현행법이나 재판부의 판단은 직접적 접촉에 얽매어 있는 듯하다. 자살예방법·「형법」 조항을 두고 ‘인터넷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직접적인 관여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살 시도 후 병원(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 참여 85개 의료기관)을 찾은 3만 665명을 분석한 결과 19~29세가 9,008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18세 이하는 4,280명(14.0%)을 기록, 2위를 차지했다. 10·20대 젊은 층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어 40~49세(4,117명·13.4%)와 50~59세(3,603명·11.7%), 60~69세(2,469명·8.1%) 순이었다. 자살 시도 동기로는 정신적 문제와 대인 관계 문제가 각각 33.2%, 17.0%를 기록해 1·2위를 나타냈다. 이어 말다툼, 싸움 등 야단 맞음(7.9%)과 경제적 문제(6.6%)가 뒤를 이었다.

IT 기술의 발달로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10·20대 자살 시도 비중도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무죄를 따지는 기준은 물론 관련 법률 조항에는 4~5년 동안 변화가 일지 않고 있다. 자살 방조 혐의가 적시된 「형법」 제252조가 제정된 건 지난 1953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12월 8일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로 단 한 차례 바뀌었다. ‘자살 유해 정보를 차단한다’는 취지의 자살예방법 제19조의 경우 2011년 3월 30일이다. 당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 유해 정보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판매 등으로 제시했다. 이후 8년 만인 2019년 1월 15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현 내용으로 개정됐다. 벌칙 조항도 개정과 함께 신설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라는 처벌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법률이 다소 모호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조죄는 물론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연관·관여에 대한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자살 방조죄, 자살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죄의 무게를 결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유무는 물론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양형 기준 마련, 조항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지만, 국회나 양형위원회의 실질적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자살예방법 개정안 1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단 3건에 불과하다. 이들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면서 완료된 21대 국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처벌 강화 등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좋지 않은 환경 자체를 없애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5.2명으로 2021년(26.0명)과 비교해 0.8명 감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는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이 10.7명으로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다. 2위인 리투아니아와도 5.6명이나 차이가 났다.

그나마 자살예방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지 않는 건 ‘위안거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처분된 사건은 총 4건이다. 지난 2022년 9건에 이어 지난해 8건을 기록하는 등 다소 줄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10·20대 젊은 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에 언제든 자살예방법 위반 범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자살방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운영 중이다. 연일 각자 아이디 뒤에 숨은 짧은 글들이 각자의 사연을 담아 올라오고 있었다. A양 아버지가 지적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글

을 쓰고 읽을 수 있었다. 달라진 건 ‘청소년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 영상 유포 차단 안내’라는 공지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점뿐이었다. 해당 글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청소년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 영상 유포 차단 협조 요청이 왔다. 게시물로 인해 모방 행위가 조장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사고 관련 영상을 비롯해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정보 게시글이 유포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C갤러리에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시글은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가 추가돼 있었다. 차단이라는 문구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강제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 몇 줄짜리 유의할 점이 글로 올라와 있을 뿐, 글을 쓰거나 보는 데 대해서는 남녀노소 자율에 맡긴 셈이다.

Q3. 자살 보도·노출…조장일까, 외면일까

전문가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국내의 좋지 않은 환경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리는 게 누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조 행위이자 ‘악행’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방송 등 미디어가 자살 보도나 극중 묘사에 유의하는 등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2023 자살 실태 조사’에서 비춰진 언론 등 미디어의 현 주소가 그리 아름답지 않은 탓이다. ‘2023 자살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52.0%)은 ‘자살 보도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영향 없음 40.8%, 모르겠음 7.2%). 특히 언론이 표출하는 자살 기사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1.3%에 달했다(긍정적 응답 9.1%). 이는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자살도 마찬가지였다. 55.5%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종 미디어에서 직접적인 자살 장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영향 없음 37.0%, 모르겠음 7.0%).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에서 직접적인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이 표현되는 데 대해선 4.1%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10명 가운데 9명(89.0%)에 가까웠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온 언론·미디어의 ‘민낯’일 수 있다. 또 자칫 자살 방조는 물론 자살예방법 위반 행위를 조장하거나, 외면한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이들 불법적 행태를 자극해 ‘암수범죄(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만 늘게 하는 좋지 못한 결과만 도출하게 했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부터 시작해 자살을 바라보는 언론·미디어의 생각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도, 이른바 ‘클릭 수를 높이고’, ‘시청률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국내 자살 문제를 외면했거나 조장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뉴스·콘텐츠가 소비되는 곳이 온라인·모바일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제목은 물론 내용

까지도 차츰 자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언론·미디어가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지목된다. 무분별한 단독 경쟁에 뉴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낚시 제목’까지 맞물리면서, 자살 등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만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살보도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 준수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리강령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비롯해 주변 상황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죽음의 방식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살이 정당한 보도 대상이기는 하나, 청소년 등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예민성·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사 작성 때 △자살 영웅시·미화·삶의 문제 해결의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단정적 판단 △흥미 유발·특종 경쟁 수단으로 다루기 △자살자와 유족 사생활 침해 등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자살률 최근 경향 △치료·상담 발전 양상 △치료·상담으로 자살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자살하지 않고도 절망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사례 △자살 징후 소개 △자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은 기사 작성 때 꼭 반영해야 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는 언론인 모두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언론·미디어에 묻고 싶다. 기사를 쓰거나, 고치는(테스크) 이들이 모두 이들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냐고.

기자 초년 시절, ‘기사는 선택이다’, ‘급하게 쓰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배웠다. 기자 개개인이 하나의 언론 기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기사 판단을 했는지는 스스로 반성해 볼 부분이다. 그동안 자살 등 관련 기사 작성에 신경을 쓴다고 했으나 스스로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단독 기사를 쓰고 싶다’거나 ‘다른 부서가 쓸 내용인데’, ‘바쁘니까, 그냥 쓰자’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경험이 있는 탓이다.

10여 년 전 대학 후배와 나눴던 기억이 불현듯 생각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후배 동생의 장례식에 갔다. 동생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 슬픔에 잠겨 있던 그는 “기자들이 흑역 기사로 쓰지도 않겠지만, 자살에 대해 다른 접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식의 유명 인사에 대한 흥미 유발성 기사가 아닌 ‘가족 등 남겨진 이들에 대해 취재해 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후배는 “동생 죽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까지 했지만, 당시 사회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다는 생각에 쉽게 지나쳤다. 자살 문제에 대한 기고를 쓰고 있는 지금도 반성해 본다. 